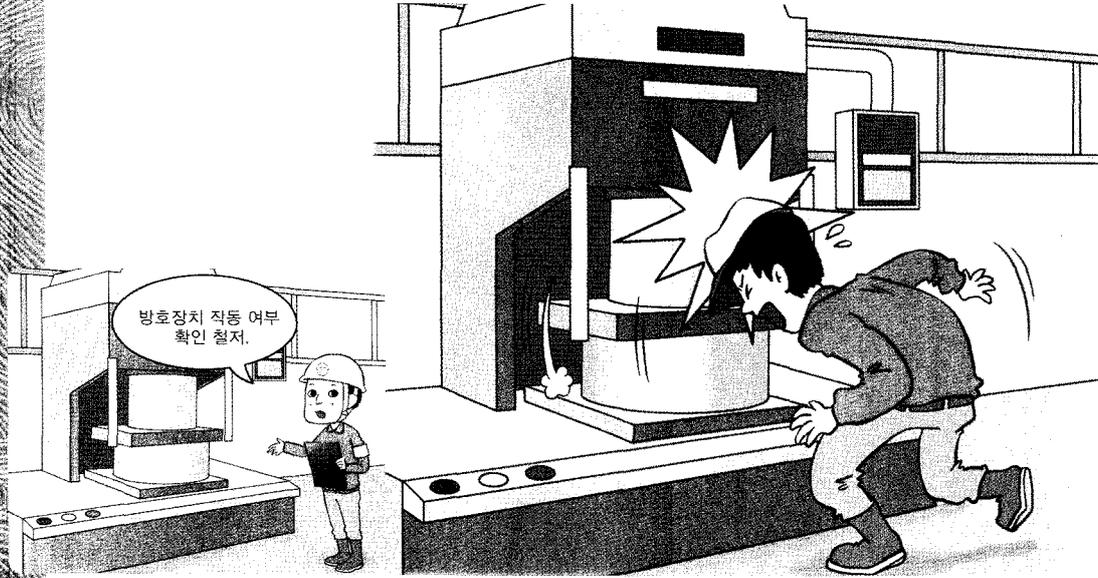


사출 인서트기에 협착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 생산품 : 세탁기, 청소기 호스 | 기인물 : 사출인서트기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피재자가 사출 인서트기에서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좌측측면에서 불량 개선방법을 지도하던 중 피재자가 지도 방법을 듣기위해 작동중인 인서트 상부몰드와 상부 몸체사이에 머리를 내밀어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목격자위치에서 설명하는 순간 사고자가 협착지점으로 머리를 내밀어 1행정(25초)후 상승몰드에 협착 하강시 감응식 안전장치는 작동멈추나 5초 후 자동상승하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셋팅되어있음. 상승시 감응식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상승몰드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감응식 안전장치가 프로그램 설정 오류
- (2) 비상정지장치가 수동 복귀형으로 설치되지 않음
- (3)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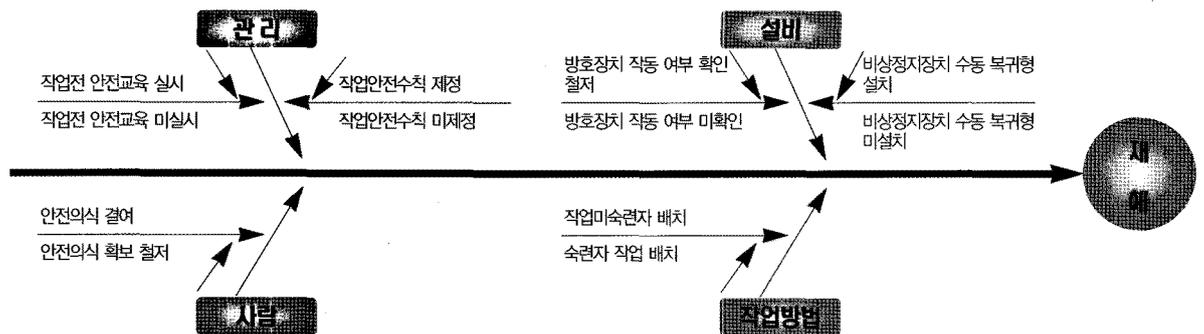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철저
- (2) 비상정지장치의 수동 복귀형을 설치
- (3) 작업안전수칙 제정과 준수 철저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게차 포크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업종 : 수송용기계구조제조업 | 생산품 : 자동차부품 | 기인물 : 지게차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페인트 도색 중 불필요한 자재를 치우기 위하여 용접반 라인 근처에서 피재자가 전선 케이블을 2층(약2M)에 올리려고 지게차 포크를 2층 난간에 걸치고 올라서서 전선 케이블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공장 내 페인트 도색을 하던 중 불필요한 전선케이블(약22kg)을 공장 상부(약2m)로 치우기 위해 피재자가 전선을 잡고 지게차 포크에 올라 상부로 접근하던 중 전선케이블 무게로 피재자가 포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재자가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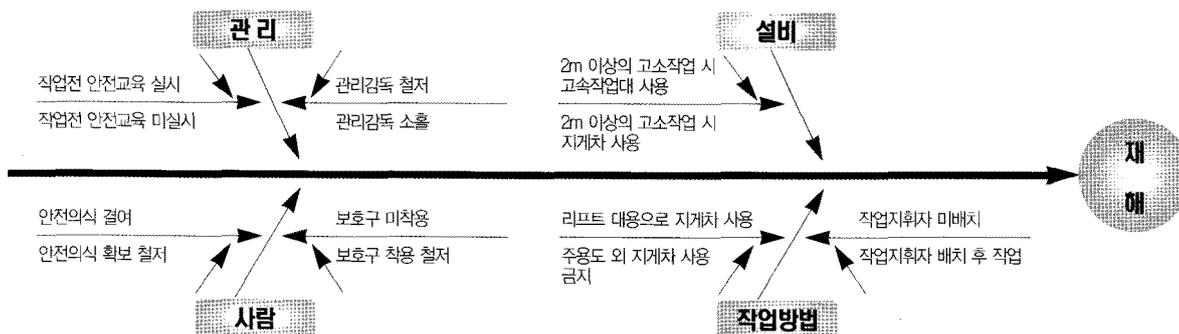
- (1) 주용도 외 지게차 사용
- (2) 안전모 미착용
- (3) 관리감독 소홀

나. 예방대책

- (1)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금지
- (2) 보호구 착용 철저
- (3) 관리감독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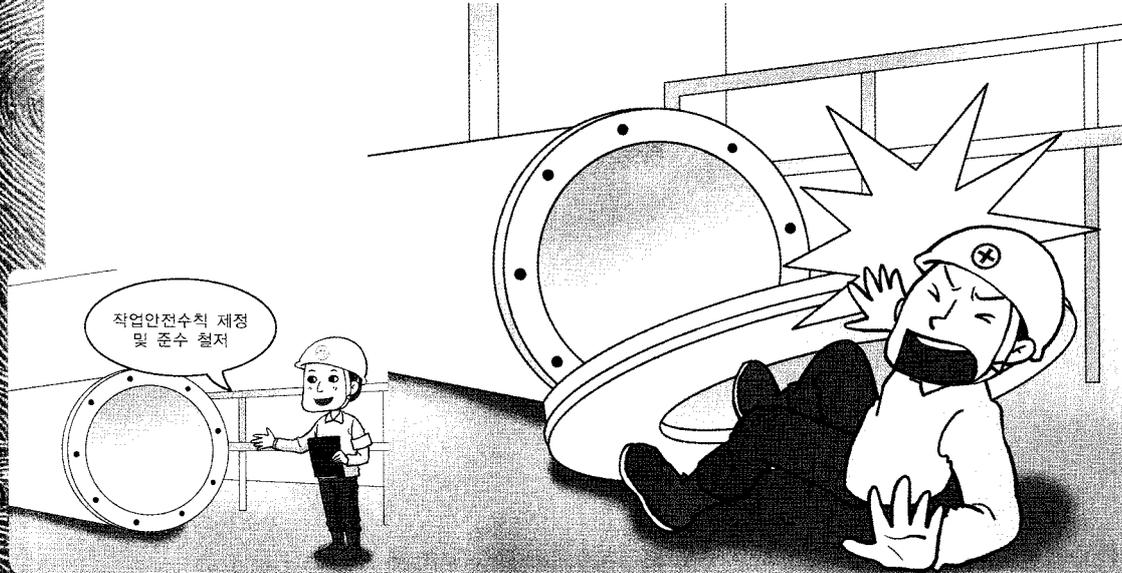
4. 법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PC관 탈형작업중 캐스팅이 전도되어 협착

*업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 | 생산품 : PC관 | 기인물 : PC관 몰드캐스팅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φ1,000mm PC관을 탈형하기 위하여 몰드와 캐스팅부 분리 작업 중 피재자가 캐스팅과 함께 넘어지면서 지면과 협착하여 골반 골절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PC관을 탈형하기 위하여 몰드를 양생실에서 탈형장으로 운반 하던 중 캐스팅을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고정 하지 않고 캐스팅 고정볼트를 미리 풀어놓은 다음 몰드에 충격을 가하자 캐스팅이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지면과 캐스팅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2)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 (3) 캐스팅 분리작업시 와이어로프 고정 후 작업

나. 예방대책

- (1)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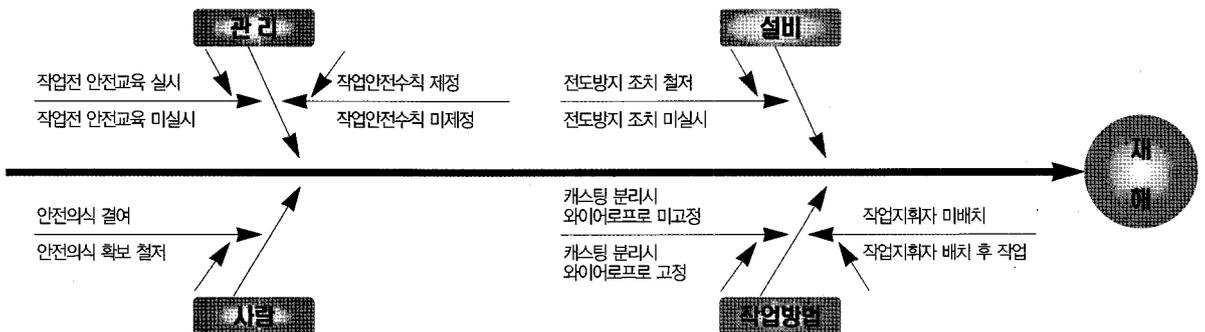
- (2)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철저

- (3) 표준안전작업방법 준수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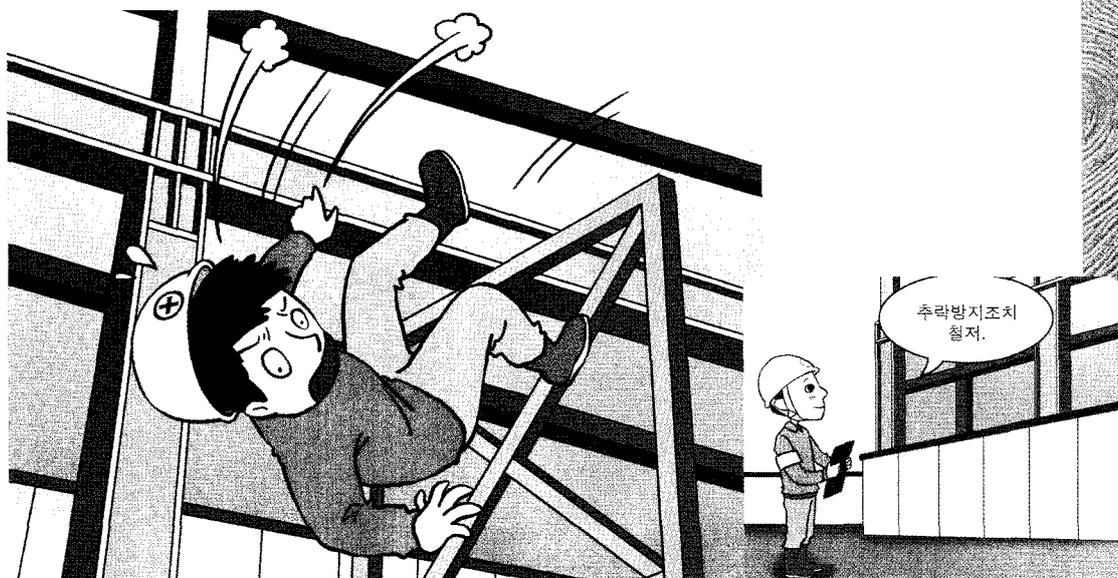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천장크레인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설치작업 중 추락

* 업종 : 건설업 | 생산품 : / | 기인물 : 바닥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집진장치 교체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인 피해자가 공장 천장크레인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설치작업중 추락하여(8m)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집진장치 교체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인 피해자는 Trolley bar 지지용 브라켓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동료작업자 2명은 피해자의 용접작업 보조업무 및 하부 신호업무를 실시함 피해자가 철골보 하부 플랜지를 밟고 브라켓 설치 및 이동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전 안전교육 미실시

- (2)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3) 안전의식 결여

나. 예방대책

- (1)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철저
- (2) 추락방지조치 철저
- (3) 투철한 안전의식 확보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